



## 유의사항

● 진료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환자를 중심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, **요양병원 의료비**, 미용·성형, 특실 이용료,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.

※ **다만, 의료최고도 환자인 경우,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**

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(제3자로 인한 구상, 자동차보험, 산업재해 등)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급여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**해당 급여,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금액을 산정 후 지급**합니다.

●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·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**보험금·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 후 지급**합니다. (정액·실손형 공통)

● 신청자는 가구의 소득, 재산, 다른 지원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여야 하며, 지원 후 **부정수급 확인 시 지원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.**



##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

### ●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

구비서류	발급기관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	국민건강보험공단
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·조회 동의서 1부	
<input type="checkbox"/>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	
<input type="checkbox"/> 가족관계증명서 1부(환자기준 발급)	행정복지센터 (주민자치센터)
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보험 가입(계약)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	보험회사
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서 1부	요양기관 (병원)
<input type="checkbox"/> 입(퇴)원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※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	
<input type="checkbox"/>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1부	
<input type="checkbox"/>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(비급여 포함) 세부내역 1부	

※ ☎ 1577-1000 또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원대상 및 추가서류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 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 
의료비 일부를 지원해드립니다!



#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?



##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

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
### ○ 지원 대상

'18.1.1. 이후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개시한 모든 질환으로 인한 입원 환자 및 중증질환\*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

\*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

※ 중증화상질환은 외래진료개시일이 '19.1.14.이후인 자부터 적용

다만, 입원 또는 외래 진료 개시일이 '19.12.31.이전인 경우 진료 개시일에 따라 시범사업(2018.1~6월), 2018년 본사업(2018.7월~) 또는 2019년 본사업(2019.1.14.~2019.12월)기준으로 나뉘어 적용

### ○ 개별 심사 제도

소득재산 수준 또는 질환의 특성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거나 못 미치더라도,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추가적으로 돕기 위한 제도

- 지원 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시
  -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
  - 의료비 13% 초과 15% 이하 발생 시 등
- 외래 대상질환 외 지원 필요시
- 고가약제 사용 등으로 초과 지원 필요시 등

# 지원대상자 선정기준



### ○ 소득 및 재산 기준
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소득하위 50%) 대상
-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합여부 판정
- 가구의 재산 합산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
### ○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보험료 기준

(월 기준 금액 이하)

가구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 이상
직장 가입자	60,680원	103,050원	133,900원	165,070원	195,110원
지역 가입자	13,990원	93,350원	128,090원	166,370원	203,130원

※ 직장가입자(피부양자)는 보수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보험료에서 합산

### ○ 의료비 부담수준

소득 수준	의료비 부담수준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시 지원
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200만원 초과 시 지원
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	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5% 초과 시 지원

※ 1인가구 : 소득수준에 따라 220만원~310만원 초과시  
2인가구 이상 : 소득수준에 따라 370만원~530만원 초과시

\* 본인부담의료비총액이란?

급여일부분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

# 의료비 지원수준



### ○ 지원 내용

- 지원일수 :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**연간 180일 이내**
- 지원금액 : **연간 2천만 원 한도** 내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%

(예비·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+ 전액본인부담금 + 비급여 - 지원제외항목 - 국가·지방자치단체 지원금, 민간보험금 등) X 50%

\*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**최대 1천만 원까지** 추가 지원 가능

### ○ 신청 및 문의

#### □ 신청방법

- 환자(또는 대리인)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
- ※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'지원 도우미'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확인 가능

#### □ 신청기간

- 퇴원 후 180일(다만, 입원 중에도 지원 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)

#### □ 구비서류

- 신청서, 진단서, 입·퇴원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, 개인정보 이용·제공 동의서,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등

#### □ 문의

- 보건복지상담센터(129, www.129.go.kr)
-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(www.nhis.or.kr)